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83

발의연월일 : 2026. 4. 23.

발 의 자 : 김용만・남인순・박범계
천준호・허 영・김남근
조승래・김영배・김태선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인력・시설과 거래의 인증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속되는 보안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

화하고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두터이 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46조 등).

법률 제 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1의2. 제21조제3항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보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의 이행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보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제28조제4항 본문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제2항”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전자금융거래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1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②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1조제3항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보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의 이행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2. 제21조제5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② (생 략)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보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

	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① ~ ③ (생 략)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 ③ (생 략)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	④ ----------제21조제5항----------

7조, 제38조, 제39조제1항·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1. 제6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6조(과징금)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신 설>	2. 전자금융거래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다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1조(과태료) ①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	4. 제21조제5항----------

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